

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-68호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2월 27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제명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하여 법률의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, 중소기업청장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창업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, 상권정보정보시스템 구축□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3086호, 2015.1.28. 공포, 2015.5.28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□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대통령령의 제명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변경함
- 나. 시·도지사는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계획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중소기업청장은 상권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을 위해 지역별 인·허가 사업장 정보 등의 자료·정보를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마. 중소기업청장이 지출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를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,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등으로 규정(안 제9조)
- 바. 중소기업청장은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)
- 사. 법률 제8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

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)

- 아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' 또는 소상공인연합회'와 유사한 명칭 사용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(안 제14조)

3. 의견제출

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(소상공인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「정보공개-행정 입법예고」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* 보내실 곳 :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

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

(전화 : 042-481-4576, Fax : 042-472-6958)
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”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”을 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”(이하”를 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(이하”로, “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”을 “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”으로, 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”를 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”를 제8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”을 소상공인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소상공인의 날)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은 매년 9월 첫째 화요일로 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 제출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해마다 수립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상권정보시스템의 운영)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1. 지역별 인가·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
2. 지역별 인구,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정보
3.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,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정보
4.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
5. 지역별 사업체 정보
6.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
7.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

제6조의 제목 (“운영세칙 등”)을 (“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”)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·교육 및 상담
2. 지역상권의 조사·분석
3.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
4.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·교육 및 상담
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

6. 그 밖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의 제목 (“창업지원 특례 적용대상 업종”)을 (“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”)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단에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기금의 보조금 지급)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기금의 환수) 법 제21조제3항에서 “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
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

제10조의 제목 (“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”)을 (“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”)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

부분 중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"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"로,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"를 환리·운용에 관한 업무"로, 사무를 진흥공단"을 업무를 공단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운용·관리"를 환리·운용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운용·관리"를 환리·운용"으로, 사무"를 업무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흥공단"을 각각 공단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진흥공단"을 공단"으로, 사무"를 업무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"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"기금운용위원회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시장등"을 천통시장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,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⑩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고유식별번호의 처리) 중소기업청장(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2.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3.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4. 법 제11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5.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6.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
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2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3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4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5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
6.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
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의 집행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과태료)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부 칙

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 ① 「<u>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“<u>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</u>”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「<u>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</u>」 제4조 및 <u>제5조</u>를 준용한다.</p> <p>③ <u>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 또는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 ① 「<u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(이하----- ----- ----- “<u>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</u>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----- ----- 수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8조</u>----- -----</p> <p>③ ----- <u>소상공인</u>-----</p>

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3조(소기업 지원계획의 수립

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그 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

-----.

제3조(소상공인의 날) 법 제4조제

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날은 매년 9월 첫째 화요일로 한다.

실적을 그 지원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조의2(공장설립에 관한 특별 적용대상 등)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“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”은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(건축물 전체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.

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, 제조시설로 사

<삭 제>

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,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

2.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 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

② 법 제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”란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.

제3조의3(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)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·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.

<삭 제>

②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. 다만,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

법 제7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 차관보
2.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

제4조(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실적

제출)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해마다 수립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3. 금융위원회 상임위원
4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
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
회장
5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
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
진흥공단 이사장
6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
중소기업은행 은행장
7.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
신용보증기금 이사장
8. 「기술신용보증기금법」에
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
장
9.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
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
앙회 회장
10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의
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
촉하는 사람 5명
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
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
이내
 - 가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
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

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나.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
나 기관의 장

다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
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
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
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
하였던 사람

라.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
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
관이나 단체의 장

마.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
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
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
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
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
있다.

제5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
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
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
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

제5조(상권정보시스템의 운영)

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“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
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
를 말한다.

1. 지역별 인가·허가 사업장에
관한 정보

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운영세칙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지역별 인구,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정보

3. 지역별 지하철 이용자 수, 차량등록대수 등 교통 관련 정보

4.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

5. 지역별 사업체 정보

6.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

7.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권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

제6조(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“전통시장등”이라 한다)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7조

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·교육 및 상담
2. 지역상권의 조사·분석
3.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
4. 전통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·교육 및 상담
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
6. 그 밖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(창업지원 특례 적용대상 업종) 법 제8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 이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.

<신 설>

제8조(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진흥공단”이라 한다)의 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,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“시장등”이라 한다)의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7조(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·감독)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단에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8조(기금의 보조금 지급)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·교육 및 상담

2. 지역상권의 조사·분석

3.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

4.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정보제공·교육 및 상담

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를 위한 관련 정보의 수집

6. 그 밖에 소상공인과 시장등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진흥공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공단의 장이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9조(기금의 보조금 지급) 법 제10조의9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

제9조(기금의 환수) 법 제21조제3항에서 “기금을 지출 목적 외

지급 등에 관하여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)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.

1. (생략)

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2.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
3.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거나 관련 단체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

제10조(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) ① -----
-----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-----

---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 ---
----- 업무를 공단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회계사무

3. (생략)
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무

②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,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명세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 기금 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④ 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한다.

제11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·운영) ① 법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

2. ----- 관리·운용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관리·운용-----

----- 업무

② 공단-----

-----.

③ 공단-----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④ 공단-----
----- 업무-----
-----.

제11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·운영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기

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(생략)
2. 소상공인과 시장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3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위원회”는 “기금운용위원회”로 본다.

<신 설>

<신 설>

기금운용위원회”라 한다)-----
-----.

② -----

- .
1. (현행과 같음)
 2. ----- 전통시장등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, 기금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<신 설>

⑦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
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
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
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 설>

⑧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
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
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중
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
위원장이 임명한다.

<신 설>

⑨ 기금운용위원회에 출석한 위
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
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
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
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
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하다.

<신 설>

⑩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
기금운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
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위원장이 정한다.

<신 설>

제12조(고유식별번호의 처리) 중
소기업청장(법 제28조에 따라
중소기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
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
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

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
2.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
3.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
4. 법 제11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
5.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

6.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에 관한 사무
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

<신 설>

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
2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집행

3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구조 고도화 지원을 사업계획의 집행

4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
5.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수립한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의 집행

6. 법 제15조에 따라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

②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

<신 설>

을 위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의 집행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과태료)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